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조치 요청을 받은 서울특별시 등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새로 구매하는 차량 중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저공해 자동차의 비율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높이고, 경유 자동차가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 자동차 및 가스 자동차의 기준과 같게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7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그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 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 소속기관의 장 및 피보험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 고용보험 []가 입 []가입탈퇴 신청서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신청인	영 문		
	성명	한글표기	성 별 [] 남 [] 여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생년월일	체류자격	

채용일	직종 부호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 여부 [] 예 [] 아니오		월평균보수(원)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나목·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 []가입탈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장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또는 선임 (서명 또는 인)

대리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처리	승인 여부	1. 승인 2. 불승인	외국인등록번호
	미승인 사유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탈퇴일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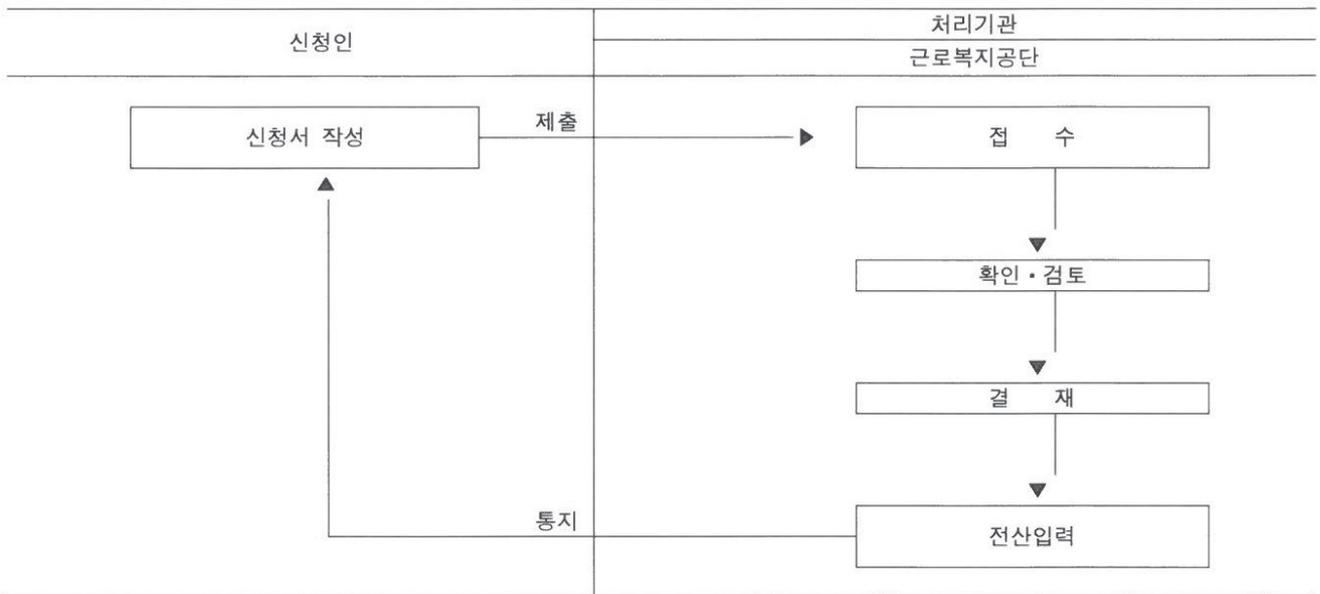
작성방법

【직종 부호】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월 평균보수(원)】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처리절차



(계3쪽)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p>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p>	<p>124 승무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종사자</p>	<p>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지 071 사회복지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p>	<p>13. 음식 서비스 관련지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p>	<p>19. 전기·전자 관련지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92 차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p>
<p>071 사회복지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p>	<p>14. 건설 관련지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p>	<p>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지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p>	<p>14. 건설 관련지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p>	<p>20. 정보통신 관련지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p>
<p>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p>	<p>15. 기계 관련지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구형 및 조각기계 조작원 156 방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자동차리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p>	<p>09. 운전 및 운송 관련지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계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물류자동화비 조작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p>	<p>15. 기계 관련지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구형 및 조각기계 조작원 156 방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자동차리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p>	<p>21. 식품가공 관련지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p>
<p>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계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물류자동화비 조작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p>	<p>10. 영업 및 판매 관련지 101 영업원 및 상품판매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역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자</p>	<p>16. 제조 관련지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금, 제관 및 세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물)</p>	<p>16. 제조 관련지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금, 제관 및 세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물)</p>	<p>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가) 224 인쇄 및 사인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p>
<p>101 영업원 및 상품판매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역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자</p>	<p>11. 정비 및 청소 관련지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12 경비원 113 청소원, 기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15 계기점검, 수급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p>	<p>17. 화학 관련지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p>	<p>17. 화학 관련지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p>	<p>23. 농림어업 관련지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p>
<p>101 영업원 및 상품판매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역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자</p>	<p>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지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p>	<p>18. 섬유 및 의복 관련지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p>	<p>18. 섬유 및 의복 관련지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p>	<p>23. 농림어업 관련지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p>
<p>101 영업원 및 상품판매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역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자</p>	<p>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지 051 법률전문가 052 법률관련 사무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p>	<p>06. 보건·의료 관련지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p>	<p>06. 보건·의료 관련지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p>	<p>23. 농림어업 관련지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p>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 가 입 신청서 [] 가입탈퇴

※ 제1쪽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1쪽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대상 공무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구분(1) [] 별정직 [] 임기제
임용일	년 월 일	구분(2) [] 국가 [] 지방
구분(3) []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 기타		
직종 부호	주 소정근로시간	
월 평균보수(원)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소속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대리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입(탈퇴)대상 공무원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가입 여부	1. 가입 대상	2. 가입 비대상
		미가입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쪽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1부(가입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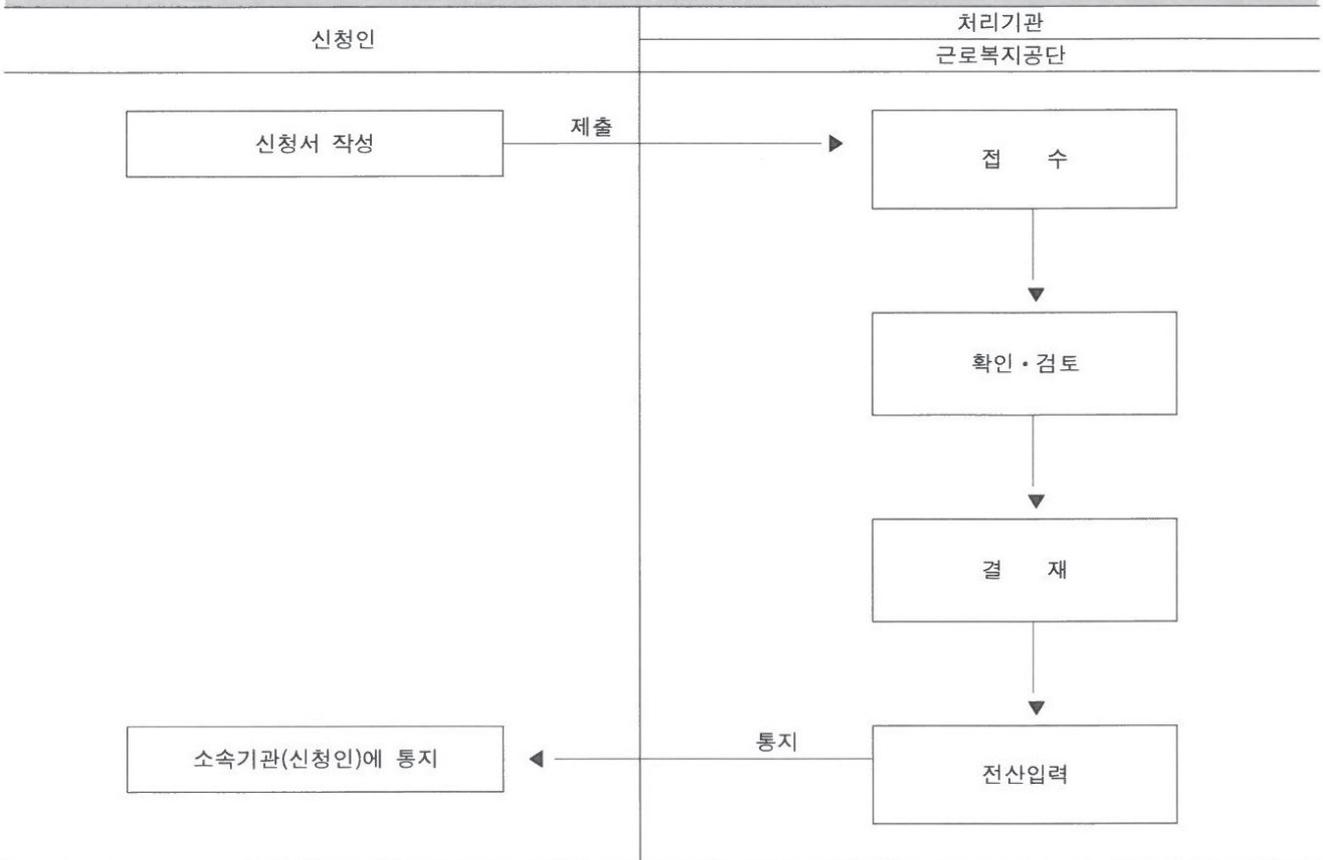
작성방법

【직종 부호】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월 평균보수(원)】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임용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처리절차



(제2쪽)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기공 관련 조직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013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6 의료장비 및 치료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제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직원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직원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3 건설미감 관련 기능 종사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직원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3 기자	144 배관공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20. 정보통신 관련직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5 디자이너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15. 기계 관련직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4 자동차정비원	21. 식품기공 관련직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3 자동차 운전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직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94 물품이동장치 조직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직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157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품 조립원	213 식품기공 관련 기능 종사자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품 조립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직원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종가인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2 판금, 제관 및 새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046 학교교사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직원(상하수, 소각)
047 유치원교사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원	164 용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직원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직원	225 목재, 펄프, 종이기공 및 제조 관련 종사자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66 금속기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직원	226 기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051 법률전문가	112 경비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직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052 법률관련 사무원	113 청소원, 가시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17. 화학 관련직	228 김반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직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06. 보건·의료 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직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061 의사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직원	231 작물재배 종사자
062 수의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직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 선임 [] 해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①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②보험사무대행기관	
사업주 (본사)	③상호·법인 명칭		
	□□□-□□□		
	④소재지		(전화번호: FAX :)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⑤대표자	⑥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⑦명칭(공사명)		
	⑧소재지		(전화번호: FAX:)
대리인 (선임)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		
	⑪자택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⑫직위 또는 직책	⑭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	
⑬선임일			
해임	⑮성명	⑯해임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뒤쪽)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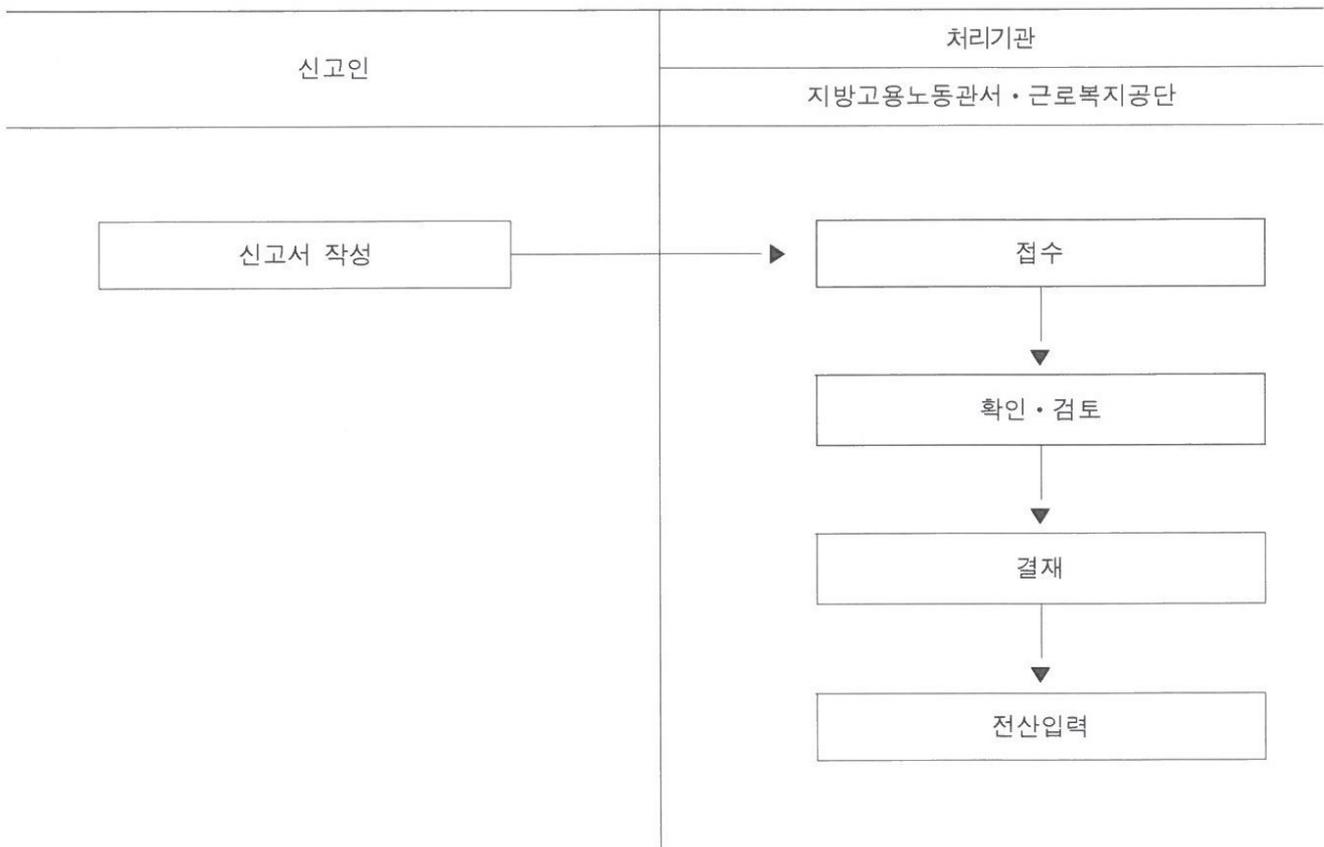
1. 선임 또는 해임 신고하려는 난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①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①의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4. ⑭의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란은 대리인의 사용인감을 찍거나 서명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하수급인 명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원수 급인	사업 주	① 본사사업장관리번호	② 상호 또는 법인명칭		
		③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④ 대표자			
	사업 장	⑤ 사업장(현장)관리번호			
		⑥ 명칭(공사명)	⑦ 보험사무대행기관		
		⑧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하수 급인 (1)	사업 주	⑨ 사업장관리번호			
		⑩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⑪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⑫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⑬ 하도급금액				
	※ 하수급인관리번호				
하수 급인 (2)	사업 주	⑨ 사업장관리번호			
		⑩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⑪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⑫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⑬ 하도급금액				
	※ 하수급인관리번호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	하수급인(1)	하수급인관리번호:
	하수급인(2)	하수급인관리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 쪽)

제출서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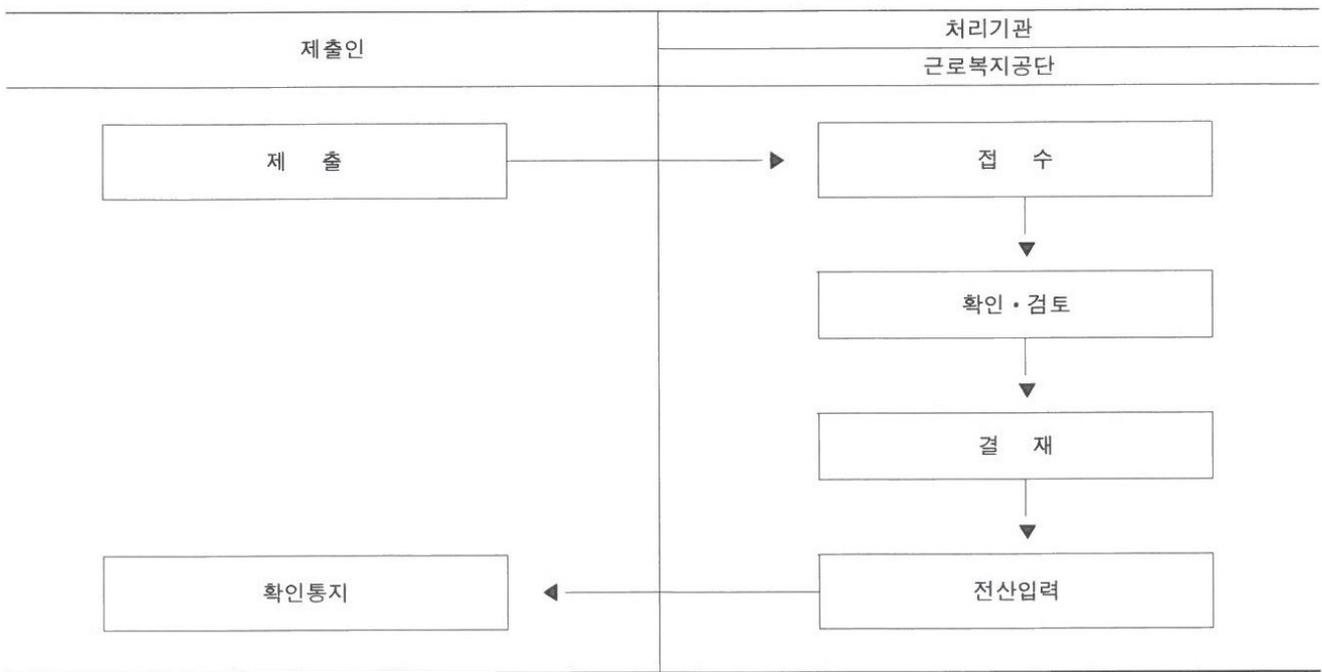
작성방법

1. ① ~ ④란은 원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⑤ ~ ⑬란은 하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①란은 원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4. ⑤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5.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명칭(공사명)을 적습니다.
6. ⑦란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⑧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⑨란은 하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9. ⑩란은 하수급인의 사업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0. ⑪란은 하수급인의 사업(본사) 소재지를 적습니다.
11. ⑬란은 해당 하수급인과 계약한 하도급 공사금액을 적습니다.
12. 「하수급인관리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13. 여러 명의 하수급인을 신고할 경우 ⑤ ~ ⑬란의 사항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하수급인 확인서

수신자		
원수급인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의 명칭	
	③소재지	
	④대 표 자	
하수급인	사업장(1)	⑤명칭
		⑥소재지
		⑦하수급인관리번호
	사업장(2)	⑤명칭
		⑥소재지
		⑦하수급인관리번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적 인**

공지사항

-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수급인관리번호(⑦)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을 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하수급인은 하수급인관리번호로 매월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향후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부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소재지		(이동전화)		FAX번호																									
전화번호		(유선)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분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월액· 월 평균보수) (원)	자격 취득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체류 자격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민연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역 연금 부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수 직종 부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자격 취득 부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건강보험</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험료 부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무원·교직원 회계명 /부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직종명 /부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직종 부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소 근로 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함료 부과구분 (해당자만)</td> </tr> <tr> <td></td> <td></td> <td></td> <td>[] 건강보험</td> <td>[]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td> <td>[]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td> <td></td> <td>부호 사유</td> </tr> </table>	국민연금	지역 연금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자격 취득 부호	건강보험	보험료 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직종 부호	주소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함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부호 사유
국민연금	지역 연금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자격 취득 부호	건강보험	보험료 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직종 부호	주소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함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부호 사유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피부양자 신청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 × 297mm(백상지 80g/㎡)

(제2쪽)

국민연금	임금대상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함)의 경우에만 제출함(나)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함)이다) 1부

유의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신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임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리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

국민연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월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혐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

고용보험산재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가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혐료 부과분은 해당지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
----------	---

210mm X 297mm(백상지 80g/㎡)

(제3쪽)

자격취득 번호 등

[자격취득 번호] 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들을 포함합니다)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번호] 1. 광원 2. 부원

[지역연금 번호] 1. 지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지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변경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종가임

[보험료 감면 번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군무)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 벽지(사업장) 42. 섬 · 벽지(거주지) 81. 휴직

[직종 번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분 번호]

부 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51	0	0	x	x	0	0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제해보상법적용자 07. 해외파견자
52	0	x	x	x	0	0	01. 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	0	x	0	0	0	0	1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21.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10mm×297mm(백상지 80g/㎡)

(제4쪽)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01. 관리자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24 승무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종사자	183 섬유기공 관련 조직원 184 의복 제조 및 수선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6 재봉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011 고용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 전기·전자 관련직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92 전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립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립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립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25 생산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26 무역 및 경매 관련 사무원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 기계 관련직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립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립원 157 자동차틀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립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 식품기공 관련직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제빵 및 떡제조원 213 식품기공 관련 기능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립원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립원 095 배럴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16. 재료 관련직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공, 제관 및 세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립원 166 금속기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립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립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 환경, 인쇄, 목재, 기구, 공예 및 생산단속직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인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립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인협상 관련 조립원 225 목재, 펄프 종이기공 및 제조 관련 조립원 226 기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립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원	17. 화학 관련직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립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립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231 직물제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12 경비원 113 청소원, 기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15 계기검침, 수급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립원	
06. 보건·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210mm×297mm(백상지 80g/m²)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코드	첨부서류 유무
			종별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피부양자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저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 국민연금
1.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제5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앞면 신고사항을 거지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작성방법

- 공통사항
- "상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상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상실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의 전입일을, 상실부 호가 6·10·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13>
 2. "당해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납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변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㉔계와 ㉕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 ㉔⑩간근로수당과 ㉕⑩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시: 이직일 다음날 (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상실(이직)사유 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으로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종고용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령
--------	---	---------	---	--------	---	--------------	---	----

신고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같음하고자 할 때 필히 기재)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사업장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공사명		고용관리 책임자 (※건설업만 해당)			(성명) (직무내용)					(주민등록번호) (근무지)[]본사 []해당 사업장(한정) []다른 사업장(한정)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체류자격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종 부호																				

근로일수 ("0" 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일수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보수총액(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부과구분 (해당자만)									
부호	사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원천징수 액	지급월	월		월		월		월	
	추징금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소득세	원		원		원		원	
	지방소득세	원		원		원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제2쪽)

유의사항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부실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기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5.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부호	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인정직업능력개발	
51	○	○	x	x	09.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1.향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2	○	x	x	x	03.현장실습생 13.향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4	○	x	○	○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55	x	x	○	○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해외파견자
56	x	x	○	x	01.별정직·임기제 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7	○	x	○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8	○	x	x	○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9.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총지급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01. 관리직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7. 화학 관련직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
03. 금융, 보험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12 경비원 113 청소원, 기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15 계기점검,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92 전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0. 정보통신 관련직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6 학교교사 047 유치원교사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4 승무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051 법률전문가 052 법률관련 사무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06. 보건·의료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화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공, 제관 및 새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뒤 쪽)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본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하는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후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㉒란의 이직사유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상실사유와 동일한 의미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구분코드란에는 아래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를 적고,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대하여 13자 이상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2. ㉓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적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여 적습니다.(예: 2000. 4. 20. 이직한 경우 2000. 4. 1. ~ 4. 20., 2000. 3. 1. ~ 3. 31., 2000. 2. 1. ~ 2. 29., 2000. 1. 1. ~ 1. 31. ... 등으로 기재).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참여한 기간만을 적습니다.

3. ㉔란의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㉓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을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4. ㉕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㉔란에 각각 적은 보수지급일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5. ㉖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 번호로 적고, “기간”란은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㉗란은 평균임금(※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함)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적고, 구분 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㉕란에 적습니다. ㉕란 중 그 밖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적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 전 12개월 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적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는 ㉙~㉚란까지는 적지 아니하며, ㉛란의 기준보수만 적습니다.

7. ㉘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8. ㉙란은 ㉗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㉘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9. ㉚란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을 적되,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적습니다(예: 6.01시간 → 7시간으로, 5.01시간 → 6시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7시간 초과 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적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쪽)

확 인 자	①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②사업장명칭										③대표자									
	④소재지 (전화번호:)																			
⑤이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⑥이직(퇴직)일			년 월 일			⑦구체적 이직사유 코드									⑧직종 코드					
⑨근로일수															⑩일평균 근로시간			⑪임금 총액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근로 일수	근로 시간	총액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뒤쪽)

작성요령

1.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①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 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4. ⑦ 구체적 이직사유 코드
 - ◆ 1.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폐업, 공사 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질병·부상, 출산 등)
 - ◆ 3. 그 밖에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5. ⑧ 직종코드(건설 관련 직종은 아래 세부 직종코드 중 해당 직종코드를 적으며, 그 밖의 직종일 경우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 관련 직종 세부 직종코드
 - 141 건축가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144 배관공
 -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유의사항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내주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3호),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3쪽)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p>01. 관리자</p> <p>011 교육공무원 및 기타 교원인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15 건설, 부동산 관련 관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18 인사,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리자</p> <p>02. 경영·회계·사무 관리자</p> <p>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22 회계, 재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25 생산 관리 사무원 026 무역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7 회계 및 접수 고액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28 안내·접수 고액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29 미서 및 사무보조원</p> <p>03. 금융·보험 관리자</p> <p>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33 보험 관련 영업원</p> <p>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리자</p> <p>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6 학교교사 047 유치원교사 및 학습지 교사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p> <p>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리자</p> <p>051 법률전문가 052 법률관련 사무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p> <p>06. 보건·의료 관리자</p>	<p>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리자</p> <p>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유아도움터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p> <p>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리자</p> <p>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p> <p>09. 운전 및 운송 관리자</p> <p>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자동차 운전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p> <p>10. 영업 및 판매 관리자</p> <p>101 영업원 및 상품종개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원 104 계산원 및 대표원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원</p> <p>11. 경비 및 청소 관리자</p> <p>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12 경비원 113 청소원, 기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15 계기점검, 수문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17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4 송부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종사자</p> <p>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리자</p>	<p>13. 음식 서비스 관리자</p> <p>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p> <p>14. 건설 관리자</p> <p>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술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술 종사자 144 배관공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5 난방 및 배관 관련 종사자 146 도료부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147 건설 및 토목 관련 단순 종사자</p> <p>15. 기계 관리자</p> <p>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 정비원 155 근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156 방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p> <p>16. 제조 관리자</p> <p>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금, 제판 및 새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절도/시멘트/석제품)</p> <p>17. 화학 관리자</p> <p>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p> <p>18. 섬유 및 의복 관리자</p> <p>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의복 제조 및 수선원 185 재단, 패턴 및 관련 기술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p> <p>19. 전기·전자 관리자</p> <p>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92 전공 193 전기, 및 배전장치 조작원 194 발전, 및 전자설비 조작원 195 발전, 및 전자설비 조작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p> <p>20. 정보통신 관리자</p> <p>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p> <p>21. 식품가공 관리자</p> <p>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술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p> <p>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관리</p> <p>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예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공예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술 종사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p> <p>23. 농림어업 관리자</p> <p>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농업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농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p>	<p>13. 복지 서비스 관리자</p> <p>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p> <p>14. 건설 관리자</p> <p>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술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술 종사자 144 배관공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5 난방 및 배관 관련 종사자 146 도료부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147 건설 및 토목 관련 단순 종사자</p> <p>15. 기계 관리자</p> <p>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 정비원 155 근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156 방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p> <p>16. 제조 관리자</p> <p>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금, 제판 및 새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절도/시멘트/석제품)</p> <p>17. 화학 관리자</p> <p>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p> <p>18. 섬유 및 의복 관리자</p> <p>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의복 제조 및 수선원 185 재단, 패턴 및 관련 기술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p> <p>19. 전기·전자 관리자</p> <p>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92 전공 193 전기, 및 배전장치 조작원 194 발전, 및 전자설비 조작원 195 발전, 및 전자설비 조작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p> <p>20. 정보통신 관리자</p> <p>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p> <p>21. 식품가공 관리자</p> <p>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술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p> <p>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관리</p> <p>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예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공예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술 종사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p> <p>23. 농림어업 관리자</p> <p>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농업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농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p>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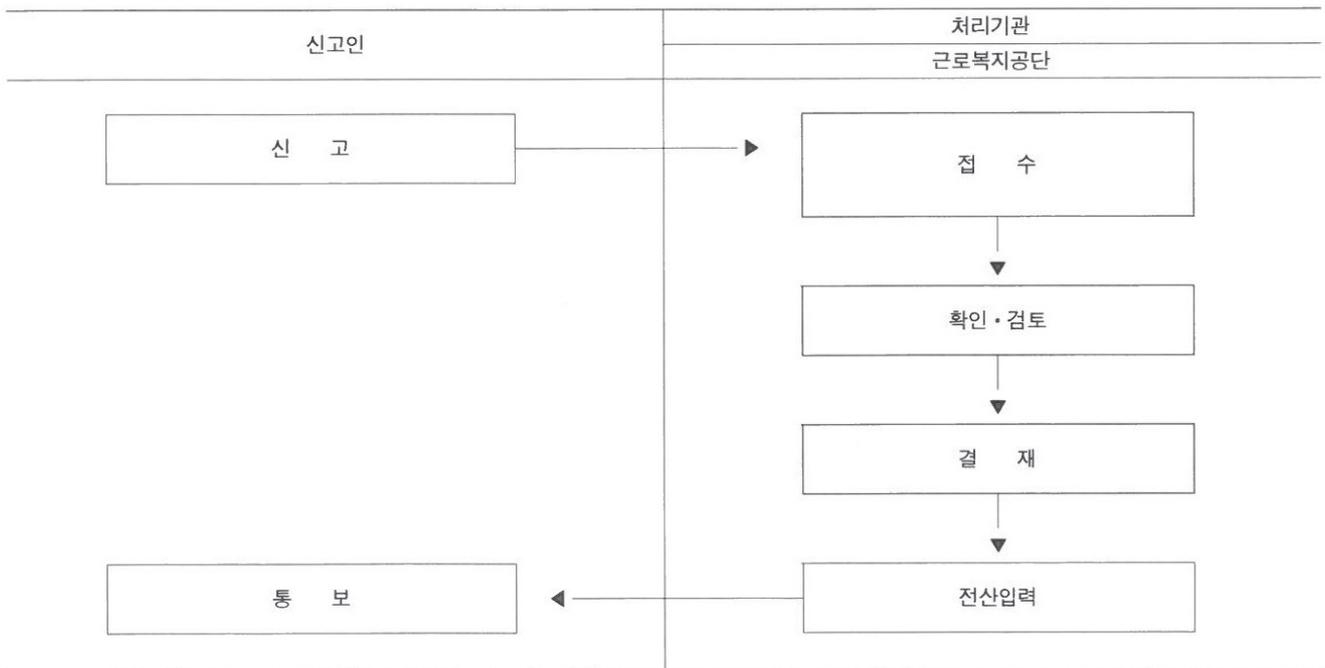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1. ① ~ ③란은 신고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④ ~ ⑦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④란은 해당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함).
4. ⑤·⑥·⑦란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대표자를 정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5. ⑧란은 해당 신고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6. ⑨란은 구체적인 신고사유 및 고용관계 사실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적습니다(예: 신고목적, 입·퇴사일, 담당업무, 퇴사사유, 월임금 등). 특히 일용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근로일수, 일평균근로시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반드시 적습니다.
7. ⑩란은 근로제공일자를 적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서류는 신고사유에 적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업주가 확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9호서식) 등] 를 말하며 그 적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수신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사업장명칭	신고일자

일련 번호	피 보험 자		자격취득· 상실여부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성 명	생년월일			

본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 인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문서번호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수신자 :

**년 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사업장명칭	신고일

일련 번호	피보험자		근로연월	근로일수	임금(보수)총액
	성명	생년월일			

본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문서번호	

178mm×279mm (전산용지 90g/m²)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 귀하는 입사/퇴직 등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상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수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상실

피보험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격취득 (고용)	자격취득일 취득신고일 (가입신청일)	상실사유
	자격상실 (퇴직)	
	상실연월일 상실신고일 (탈퇴신청일)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문서번호	

178mm×279mm (전산용지 90g/㎡)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귀하의 일용근로내역이 다음과 같이 신고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

년 월(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피 보 험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 로 내 용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연락처	현장명	근로연월	근로일수	임금(보수)총액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에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문서번호	

178mm×279mm (전산용지 90g/㎡)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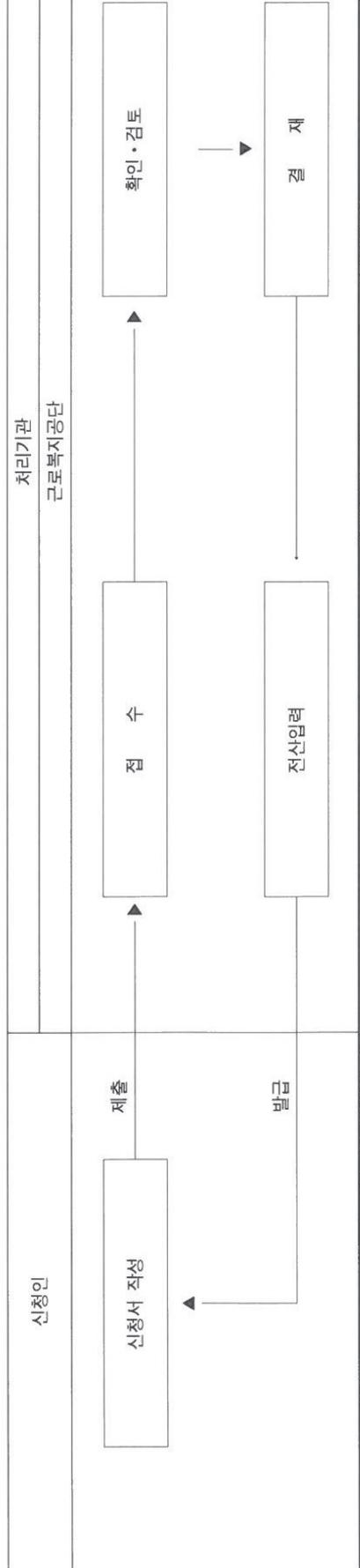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1. ①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거나, 카드발급 대상자가 하수급인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명칭(공사명)이나 해당하수급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공사명을 적습니다.
4. ④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5. ⑤·⑥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은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전산입력을 위한 비밀번호를 숫자 또는 영문자(혼합기제 포함) 4자리로 적습니다.
7. ⑧란은 카드를 수령하려는 주소 또는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자택주소를 적습니다.
8. ⑨란은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자택연락처 및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
9. ⑩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일일임금을 적습니다.
10. ⑪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일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11. ⑫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직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사업장	전근(전보) 이전 사업장	전근(전보)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피 보험 자 (근 로 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근 일
	[]고용[]산재				년 월 일
	[]고용[]산재				년 월 일
	[]고용[]산재				년 월 일
	[]고용[]산재				년 월 일
	[]고용[]산재				년 월 일
	[]고용[]산재				년 월 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가 전근(전보)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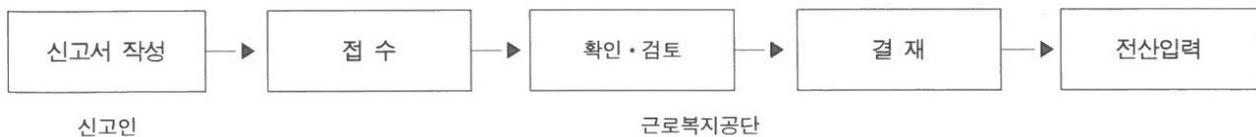
(뒤 쪽)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작성합니다.
2.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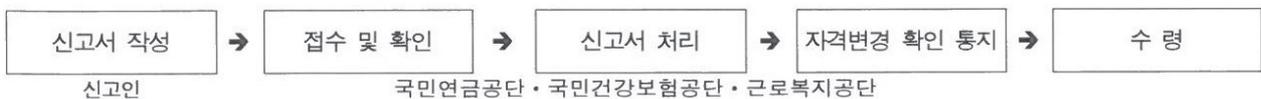
유의사항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내용변경부호] :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기초생활수급자 ⇔ 급여특례·차상위계층) : 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종료일(고용·산재만 해당)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549호, 2016. 10. 18.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1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25호, 2015.10.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가중한 금액”을 “가중·감경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I. II. 외의 부분 중 “필수적 가중”을 “필수적 가중·감경”으로 하고, 별표 3. II.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1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관련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의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한다.